

제22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민안전
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5 월 9 일

여 수 시 장 김기영 인



여수시 조례 제1877호

붙임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1877호

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제8조에 따라 여수시 관할구역 내”를 “제6조제1항에 따라 시”로, “주민을”을 “사람을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가입대상) 이 조례에 따른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2조제4호에 따른 시민
2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
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 2 조 (정 의)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“시민”이란 「주민등록법」 제8조에 따라 여수시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.	4. -----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 ----- 사람을 -----.
제3조(가입대상)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. 다만,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.	제3조(가입대상) 이 조례에 따른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2조제4호에 따른 시민 2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